## 공학대학원 학칙시행세칙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인하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있어 공학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한다.)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입 학

- 제2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학기 초로부터 30일내로 한다.
- **제3조** (응시자격) ①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의 입학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2.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 ② 공개강좌를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로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 **제4조** (응시구비서류) 각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석사학위과정
  - 가. 입학원서
  - 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 라. 재직증명서
  - 마. 명함판사진 2매
  - 2. 연구과정
  - 가. 입학위서
  - 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다. 이력서 1통
  - 라. 명합판사진 2매
  - 3. 공개강좌
  - 가. 입학원서

- 나. 졸업(예정)증명서
- 다. 명함판사진(6개월이내 촬영) 2매
- **제5조** (입학전형 방법) 석사 및 연구과정의 전형은 다음 방법중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1. 서류심사
  - 2. 구술 면접 시험
  - 3. 필답고사
- 제6조의1 (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으로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할 경우에 정원의 2%의 범위내에서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 ②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대학원의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제6조의2 (군제휴 위탁생) ① 학·군 협약에 의거하여 입학하고자 하는 군제휴 위탁생은 입학정원외로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기타 군위탁생에 관한 사항은 학·군제휴협약에 따른다.
- 제7조 (필답고사 과목) 석사 및 연구과정의 입학전형에 있어 필답고사는 다음 과목중에서 행하되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1. 논 문
  - 2. 전공과목
  - 3. 외국어
- **제8조** (필답고사 합격기준) 필답고사의 평가는 100점으로 하여 과락은 40점 미만으로 하며 평균 60점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 제9조 (합격사정 절차) 각 모집학과의 합격기준에 도달한 학생은 대학원위원회의 3분의 2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합격순위를 정한다.
- **제10조** (합격사정) 대학원위원회는 최종 합격 예정자를 다음에 의거 확정한다. 다만, 전공별 사정에서 불합격된 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합격시킬 수 없다.
  - 1. 시험점수의 합격기준 검토
  - 2. 전공별 정원의 검토
  - 3. 대학원 수학의 적부 검토
- **제11조** (입학의 요건) 합격통지를 받은 자는 공고기간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 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

#### 제3장 등 록

- 제12조 (등록의 종류) 등록은 정규등록, 연구등록, 미취득학점등록의 3종류로 한다.
- 제13조 (정규등록) 규정학점 취득을 위한 교과과목의 이수, 연구실험, 연구보고서, 논문작성 등을 포함하는 정규학기의 등록을 정규등록이라하며, 석사과정에 서는 최소한 4학기,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과정에서는 최소한 2학기의 정규

등록을 해야 한다.

- 제14조 (정규등록금) 정규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실험실습비 등을 포함한다.
- 제15조 (연구등록) 4학기까지의 정규등록을 필하여 논문학위제의 경우 24학점, 학점학위제의 경우 30학점을 취득한 후에도 연구실험이 있거나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작성이 진행중인 학생은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는 학기까지 연구등록을 해야 한다.
- 제16조 (연구등록금) 연구등록금은 논문지도비 및 실험실습비를 포함한다.
- 제17조 (미취득학점등록) ① 4학기이내에 소정의 학점중 취득하지 못한 학점이 있는 자는 미취득학점등록을 하여야 하며, 과정별 소정의 학점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 1. 논문학위제 24학점
  - 2. 학점학위제 30학점
  - ② 수료 후 학위제를 변경한 자의 미취득학점등록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8조** (미취득학점등록금) 미취득학점을 수강할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 제4장 교과과정

- 제19조 (수업) ①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매학기 수업일수는 16주이상으로 한다.
- 제20조 (수업연한) ① 각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년이상으로 한다.
  - ② 각 특수대학원의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 **제21조** (학점수) 모든 이수과목의 단위는 2학점으로 하며 주당 1시간 1학기(16주) 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제22조** (교과과정과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의 교과과목에는 전공과목, 연구, 타 전공과목, 공통선택과목 등을 둔다.
  - ②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데 필요한 학점수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학위제
  - 가. 전공과목 14학점 이상
  - 나. 연구 4학점(연구 I, 연구 II)
  - 다. 타 전공과목 및 공통선택과목 6학점 이내
  - 2. 학점학위제(연구보고서 선택)
  - 가. 전공과목 22학점 이상
  - 나. 연구 2학점(연구)
  - 다. 타 전공과목 및 공통선택과목 6학점 이내
  - 3. 학점학위제(연구보고서 미선택)
  - 가. 전공과목 24학점 이상

- 나. 타 전공과목 및 공통선택과목 6학점 이내
- 4. 학점학위제(문제해결 프로젝트 보고서 선택)
- 가. 전공과목 24학점 이상(문제해결 프로젝트 2학점 포함)
- 나. 타 전공과목 및 공통선택과목 6학점 이내
- ③ 타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타 전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과주임 교수 및 지도교수가 인정할 경우 전공과목으로 간주한다.
- 제23조 (연구과목신청요건) 연구 I 은 12학점 취득후에 신청할 수 있다.
- **제24조** (교과과정의 설정) ① 전공과목은 매 2년마다 각 학과의 교수회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공통선택과목은 본 대학원에서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5조 (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①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12학점 이내에서 각 전공 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 ② 석사학위과정수료를 위해 필요한 학점중 전공필수 학점 이외의 잔여 학점은 본 대학교 타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할 수 있다.
  - ③ 동일 과정에 재입학 하였을 때는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제26조** (이수학점 인정서류) 제25조의 학점인정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 1. 학점인정원
  - 2. 타 대학원 성적증명서
  - 3. 타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 제27조 (수업연한 단축) 제20조와는 예외적으로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학위수여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 제28조 (교과목의 개설) 각 학과 및 전공의 주임교수는 교육과정에 따른 설강과목 및 교수진영에 대한 안을 개강 3주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9조 (교과목의 폐강) 수강생수가 2명미만인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폐강할 수 있다.
- 제30조 (강의방법) 강의는 전강, 윤강, 특강으로 구성한다.
  - 1. 전강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외래강사가 담당할 수 있다.
  - 2. 윤강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및 외래강사로 구성하되 그 주관 및 평가는 본 대학교 교수가 한다.
  - 3. 특강은 필요에 따라 각 전공주임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 제31조 (주임교수) 본 대학원에는 각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며, 한 학과가 2개 이 상의 전공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학과주임교수를 별도로 둔다. 주임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수로 한다.

- 제32조 (주임교수의 직무) 전공주임교수는 당해 전공과목의 설강, 강사진영의 구성에 대한 제청과 학생의 지도교수 선임 제청, 시험의 주관 등의 학사업무를 주관하고, 학과주임교수는 당해 학과의 공통과목의 설강, 세미나 강사진영의 구성, 문제해결 프로젝트 지도교수 선임 및 이와 관련된 기타 학사업무에 참여한다.
- 제33조 (지도교수의 위촉) 지도교수는 학생별로 정하며 제1차 학기를 수료한 후 당해 학생의 의견 및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학과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에게 제청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제34조** (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는 담당학생의 연구논문지도 및 학사지도를 담당하다.
- 제35조 (지도교수의 자격) 지도교수는 전공분야와 동일분야·동일계통의 본 대학 교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수로 한다.
- 제36조 (지도교수의 변경) 사고, 자격상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33조의 절차에 의하여 지도교수를 변경 위촉한다.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하여야 할 경우에는 2개 학기이내에 제33조의 절차에 의하여 지도교수를 변경 위촉하여야 한다.

### 제5장 휴학, 복학, 제적 및 재입학

- 제37조 (휴학 및 복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 4분의 1 기간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16년 1학기 신입생부터는 통산 6개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 ③ 병역의무·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학기간은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④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초 4주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휴학학기의 등록금은 수업일수 4분의 1이전에 휴학하였을 때에만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 **제38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 제39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 1.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 2. 학업에 태만하거나 또는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거나 불미한 행동을 한 자
  - 3. 시험부정 행위자
  - 4. 수업을 방해하거나 선동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 5. 등록기일내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 6.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제40조 (재입학) ① 제적 당하거나 자퇴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는 매학기 등록 기간중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② 재입학에 한하여 기존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 제41조 (복적) 제적된 자는 복적할 수 없다. 다만, 제39조 제5호 및 제6호의 해당 자가 복적을 원할 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허가로 복적할 수 있다. 복적의 절차는 재입학의 절차에 준한다.

#### 제6장 전공종합시험

- 제42조 (응시자격) 전공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사항에 의한다.
  - 1. 석사과정 16학점을 평균 Bo이상으로 이수한 자
  - 2. 3학기이상 등록한 자
- 제43조 (시험절차) 전공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의 승인을 얻어 시험실시 10일전까지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 **제44조** (시험일자) 전공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5조 (시험과목) 전공종합시험의 시험과목수는 3개 교과목이상으로 하고 시험교 과목 내용은 각 학과 또는 전공별로 정한다. 다만, 전공종합시험의 해당과 목의 성적이A<sub>0</sub>이상인 경우 시험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 제46조 (출제위원) ① 전공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의 조교수이상의 교원 으로 하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② 교과목당 출제위원은 2인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
- 제47조 (합격인정점수) 각 교과목의 만점은 100점으로 하고 60점이상일 때 합격으로 한다. 다만, 불합격된 과목이 있을 때는 재응시할 수 있고 재시험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제7장 수강신청, 평가 및 성적

- 제48조 (수강신청의 시기)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개강 전 2주일 이내로 한다.
  - ② 3차 학기 수강신청시에 논문학위제와 학점학위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이후 재학 또는 수료 상태에서 학위제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연구과목의 수강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학위제의 경우 '연구 I'은 3차 학기, '연구 II'는 4차 학기
  - 2. 학점학위제(연구보고서 선택)의 경우 '연구'는 4차 학기

- 제49조 (수강신청의 절차 및 정정) ①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을 본 대학교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 ② 수강 과목의 수강과목의 변경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한하여 허용한다.
- **제50조** (수강신청학점 및 수강과목별 학점수) ① 매학기 수강학점은 8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 ② 학생이 각 과정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이수과목별 학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전공과목	연구	타 전공과목 및 공통선택과목	합계	
석사과정	논문학위제		14학점 이상	4학점	잔여학점	24학점	
	학점 학위 제	연구보고서 선택	22학점 이상	2학점	잔여학점	30학점	
		연구보고서 미선택	24학점 이상	•	잔여학점		
		문제해결 프로젝트보고 서선택	24학점 이상		잔여학점		
연구과정		16학점	•	•	16학점		

- 제51조 (평가의 종류 및 시기) 본 대학원의 각 과정을 이수하는데 있어 평가 및 실시 시기는 다음 2종류로 한다.
  - 1. 기말시험(매학기말 수업일수 4분의 3선 경과 후)
  - 2. 전공종합시험(별도 규정에 의함)

다만, 경우에 따라 중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2조** (시험의 방법) 시험은 과목담당교수의 결정에 따라 실시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한다.
  - 1. 필답고사 (본교 소정의 용지를 사용한다)
  - 2. 연구과제물 (해당학기 수강과목과 동일한 분야)
- 제53조 (시험의 성적) 성적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며  $C_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전 이수과목의 평점평균  $B_0$ 이상을 졸업 및 수료사정의 요건으로 한다.

등록	점수	평가	등급	점수	평가
A+	95~100	4.50	C+	75~79	2.50
$A_0$	90~94	4.00	$C_0$	70~74	2.00
B+	85~89	3.50	F	69이하	0
$B_0$	80~84	3.00	NC	무평점	

**제54조** (출석) 각 과목 총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함으로써 응시의 요건을 갖추 게 된다.

#### 제8장 전공변경

- **제55조** (전공변경 제한 및 학점인정) ① 전공의 변경은 동일계열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② 변경 전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변경 후 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제56조** (전공변경 절차)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매학기 시작 전 30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전공변경원
  - 2. 성적증명서

#### 제9장 학위논문

- 제57조 (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 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4학기 정규등록을 필하고 소정의 논문지도를 받는 자 단, 수업연한 단축 자는 예외로 한다.
  - 2.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 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을 받은 자
  - ② 학위논문은 관련학회 또는 대학원 논문발표회에서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 제58조 (학위논문의 제출시기) 학위청구 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과 11월, 연 2회로 하다
- 제59조 (학위논문 제출절차 및 구비서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함에는 논문 심사료 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위청구 논문제출원 1부
  -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3. 예비심사용 논문 4부
  - 4. 성적증명서 1부
  - 5. 논문발표증명서 1부
- **제60조** (예비심사용 논문) 예비심사용 논문은 대학원 소정의 용지에 기입한 것 또 는 이를 복사한 것으로 한다.
- 제61조 (논문의 반환)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제출자격의 부족 또는 기타의 이유로 써 접수를 거부하였을 때는 이 규정 제59조의 서류와 함께 논문심사료를 반려한다.
- 제62조 (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위원은 3인이상을 대학원위원회에 추천하여 대학 원장이 위촉한다.

- 제63조 (심사위원의 자격) 제출논문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전공의 본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동일한 전공의 조교수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 **제6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하다.
  - ② 심사위원 중에서 주심(심사위원장) 1인을 두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③ 논문지도교수는 부심이 된다.
- 제65조 (심사위원의 교체금지) 논문심사를 개시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해외여행·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 제66조 (심사정족수)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하에 행해야 한다.
- 제67조 (심사의 방법) 논문의 심사는 제출된 논문원고에 대하여 행하며 내용의 수 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게 부논문, 인용문헌,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소정의 체제 및 규격에 맞추어 인쇄제작된 논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명할 수 있다.
- **제68조** (심사기간) 학위논문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는 심사위촉일부터 31일 이내로 완료해야 한다.
- 제69조 (심사연기) 예비심사결과 내용이 학위논문으로서 불충분하여 연구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추가 연구를 지시함과 동시에 심사를 1학기이상 연기시킬 수 있으며 주심은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70조 (논문심사의 판정) 논문심사의 평가는「가·부」로 하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가」로 평가할 때 합격으로 한다.
- **제71조** (논문의 양식) 본 심사용의 논문의 크기는 4.6배판(가로 188mm×세로 257mm) 으로 하며, [별지 제 1, 2, 3호 서식]에 준한다.
- 제72조 (논문의 제출부수) 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1부(하드카바 또는 소프트카바)를 논문통과 후 15일 이내에 대학원에 제출해야 하며 본 대학교 정석학 술정보관에 1부를 영구 비치한다.

#### 제10장 학위수여

- 제73조 (학위의 종류)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공학석사로 한다.
- **제74조** (학위수여 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 수여 자격을 가진다.
  - 1. 규정된 이수과목(논문학위제의 경우 24학점 이상, 학점학위제의 경우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2. 취득한 학점의 평균이 B<sub>0</sub> 이상인 자
- 3.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4. 논문학위제의 경우 학위논문이 심사에서 통과된 자, 학점학위제(연구보고서 선택)의 경우 지도교수가 인정한 전공분야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 제75조 (학위수여의 결정) 학위수여 자격을 갖춘 학생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학위수여일로 부터 적어도 1개월 이전에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 여자격을 심의하고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제76조 (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년 2회로 하며 매년 2월과 8월중에 행한다.
- 제77조 (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논문학위제를 채택한 학생에 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을, 그리고 학점학위제를 채택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 제11장 연구과정

- 제78조 (연구과정) ① 대학원에는 심오한 학식 및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지도할 목적으로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생의 입학자격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 ③ 연구과정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연구생에게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⑤ 연구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 제79조 (연구과정 교육의 목적) 연구과정은 다년간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론 적인 체계를 정리하고 새 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을 교수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0조 (전공분야의 종류) 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 제81조 (교육과정) 연구과정 학생은 최저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제82조** (수학연한) 연구과정 학생은 1년간 12학점을 이수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3조** (증서의 수여) 연구과정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 과 같은 증서를 수여한다.

#### 제12장 공개강좌

- **제84조** (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수 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과목, 주제, 기간, 수강대상 및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대학원장이 발표한다.

- 제85조 (공개강좌의 목적) 공개강좌는 다년간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론적인 체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86조 (전공분야의 종류) 전공분야는 석사학위에 준한다.
- 제87조 (교육과정) 공개강좌 학생은 과목선택에 제한없이 1년간 12학점을 이수해 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4학점씩 3학기간에 이수할 수도 있다.
- **제88조** (증서의 수여) 공개강좌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 과 같은 증서를 수여한다.

#### 제13장 산업관리자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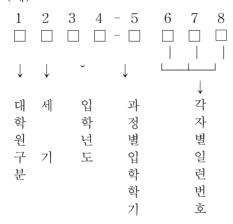
- 제89조 (입학자격) 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
  - 1. 공ㆍ사기업의 임원
  - 2.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 및 영관급 이상의 장교
  - 3. 개인사업자
  - 4. 기타 위에 준하는 경력의 소유자
- 제90조 (교육과정) 본 과정의 각 교과목은 소정의 세부주제로 구성한다.
- 제91조 (이수기간) 본 과정의 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92조 (이수요건) 본 과정의 이수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한편, 본 과정 이수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2차 학기초에 지도교수를 지정 받아야 하며, 소정의 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3조 (증서의 수여) 제92조의 이수요건을 갖춘자에게는 본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증서를 수여한다.

### 제14장 학생번호 및 전공기호

- 제94조 (학생번호) 본 대학원 입학자에게는 입학절차가 완료됨과 동시에 학생번호 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학번이라 약칭한다.
- 제95조 (학번의 사용) 학번은 학적부 학생카드 학생증 모든 서류에 사용한다.
- **제96조** (학번의 구성) 학번은 8단위 숫자를 사용하여 첫 네자리와 다음 네자리 사이에 이음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첫째 자리수 대학원구분
  - ② 둘째 자리수 세기표시
  - 1 1900년대

- 2 2000년대
- 3 2100년대
- ③ 셋째 및 넷째 자리수 -- 입학년도 표시
- ④ 다섯째 자리수 과정별 입학학기
- 1 석사과정 전기입학
- 2 석사과정 후기입학
- 3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과정 전기입학
- 4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과정 후기입학
- 5 관리자과정 전기입학
- 6 관리자과정 후기입학
- ⑤ 여섯째 자리이후--인원에 의한 각자 일련번호

(예)



⑥ 각 전공의 고유기호는 다음과 같다.

- · 전기공학 전공 …………… I · 전자공학 전공 …………… J
- · 컴퓨터공학 전공 ...... B
- · 재료공학 전공 ····· E
- · 화학공학 전공 …… H
- · 건축공학 전공 ············· M
- · 공간정보공학전공..... P
- · 기계공학 전공 ……… L
- · 산업경영공학 전공 ………… A
- · 환경공학 전공 …… F
- · 빅데이터 전공 …… D
- · 블록체인 전공 …… C

**제97조** (경과규정) 2019년 8월 12일 이전 학과 고유기호는 아래의 기호를 적용한다.

- · 산업경영정보공학과 ………… A
- · 정보공학과 ...... B
- · 기계공학과 ..... L

· 에너지공학과D· 재료공학과E· 환경공학과F· 건축공학과M· 토목공학과N· 장업화학과O· 정보전기공학과I· 산업전자공학과J· 자동화공학과K· 지리정보공학과P

제15장 각종수업료 및 학위청구논문심사료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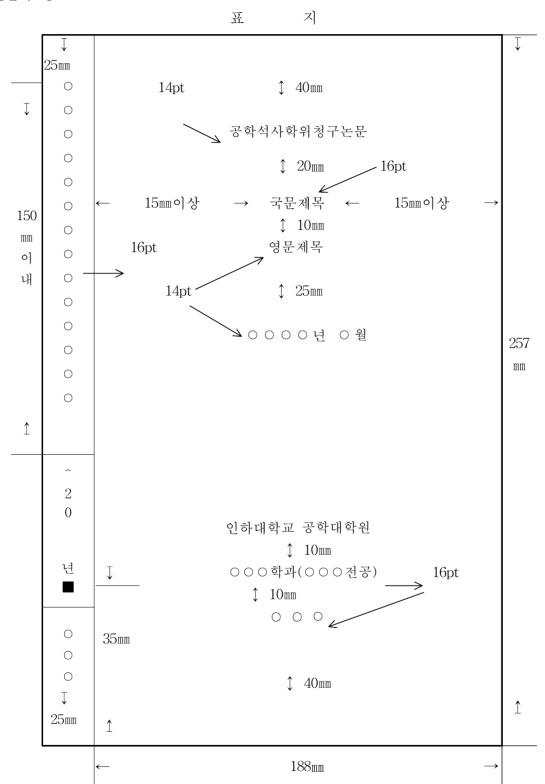
제98조 (시험의 종류) 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입학시험
- 2. 석사학위과정의 전공종합시험
- 3. 기타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 제99조 (입학시험) 입학시험의 수험료는 매년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 **제100조** (기타시험에 대한 응시료) 제95조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에 대한 과목당 응시료는 대학원장이 정한다.
- 제101조 (추가비용징수) 제95조제2호 및 제3조의 시험에 있어서 수험생이 적은 때에는 출제, 채점, 감독수당 및 기타비용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2조 (학위논문심사료) 학위논문심사료란 석사학위 청구논문에 대한 심사료를 말하며 심사료는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2020. 8.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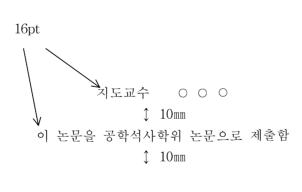
【별지 1】



### 【별지 2】

속 표 지

다음 2행 이외는 표지와 같음



## 【별지 3】

인 준 서

$\downarrow$
50mm
$\uparrow$
이 논문을 〇〇〇의 공학석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 15mm
<b>13</b> IIII
년 월 일
<b>1 1 1</b>
↑ 15mm
주심
부심 30mm
위원
⊬ 70mm →
활자는 모두 16pt

【별지 4】 논문제 학위 수여자 석제 호

#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공학대학원의 ○○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출 하여 본 대학교 공학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공학석사의 자격을 갖 추었음을 인정함.

논문제목:

년 월 일

인하대학교 공학대학원장 (학위명) 〇〇〇 직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공학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인하대학교 총 장 (학위명) 〇〇〇 직 인

학위번호: 인하대○○(석)○○

【별지 5】 학점제 학위 수여자석제 호

#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공학대학원의 ○○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본 대학교 공학대학 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공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인하대학교 공학대학원장 (학위명) 〇〇〇 직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공학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인하대학교 총 장 (학위명) ㅇㅇㅇ 직 인

학위번호: 인하대〇〇(석)〇〇

【별지 6】

제 호

수 료 증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학과 ○○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 료하였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인하대학교 ○○대 학 원 장 (학위명) ○○○ 직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인하대학교 총 장 (학위명) ㅇㅇㅇ 직 인

【별지 7】

제 호

# 수 료 증

성명 :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공학대학원 ○○학 연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 기에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인하대학교 공학대학원장(학위명) ○ ○ ○ <sup>직</sup>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인하대학교 총 장(학위명) ○ ○ ○

제정 : 2020. 8. 25.

【별지 8】

제 호

수 료 증

성명: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공학대학원의 OO학과 공개강좌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 하였기에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인하대학교 공학대학원장(학위명) ○ ○ ○ <sup>인</sup>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인하대학교 총 장(학위명) ○ ○ ○ □ □

【별지 9】

제 호

증 서

성명: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공학대학원 산업관리자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연구보고서 제목:

20 년 월 일

직 인하대학교 공학대학원장(학위명) ○ ○ ○ □ □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인하대학교 총 장(학위명) ○ ○ ○

- 22 -

제정 : 2020. 8. 25.

【별지 10】

제 호

# 수 료 증

성명: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공학대학원 산업관리자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인하대학교 공학대학원장(학위명) ○ ○ ○ <sup>인</sup>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인하대학교 총 장(학위명) ○ ○ ○

제정 : 2020. 8. 25.

#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번호	개정일자	번호	개정일자
1		16		31	
2		17		32	
3		18		33	
4		19		34	
5		20		35	
6		21		36	
7		22		37	
8		23		38	
9		24		39	
10		25		40	
11		26		41	
12		27		42	
13		28		43	
14		29		44	
15		30		45	